

##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, 강제징수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, 제118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등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, 강제징수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06. 22.

###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



1. 건 명 :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, 강제징수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험료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06. 22. ~ 2026. 07. 06.(15일간)
5.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김철중(☎ 061-650-01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